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부검소견서. 다만,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1)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
- 2)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</u>한 경우로서 <u>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u>	<u>제외한다.</u> 1) <u>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</u>한 경우로서 <u>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</u> 2) <u>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</u>
다. (생략) 2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